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3
----------	-----

2025. 9. 1.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기획경제국장 심혁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다. 출연목적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 관리 등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라. 출연규모 : 8억원(2025년도 누적출연규모 20억원)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가. 합 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 입장임.

#### 5. 검토보고(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출연 취지 및 배경

- 이 안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강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임.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채무 보증 등을 위하여<sup>1)</sup> 1999년에 설립된 중소기업부 소관 특수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기업등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추진 시 협약을 통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협력기관임.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 조직현황: 본점(마포구 공덕동) 및 25개 지점(자치구별 1개 지점)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개인
- 사업내용: -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운영  
- 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신용보증서 발급 포함)  
- 소기업등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 소기업등에 대한 경영지도(창업컨설팅, 마케팅) 등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요 재원: 중소벤처기업부 출연금)과 달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정부·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등과 기업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며, 그 기본재산으로 지역 소재 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자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고, 출연 허용을 위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sup>2)</sup>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기업·소상공인 현황

- 중기업·대기업 비중이 높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기업은 약 14.6만개, 소상공인은 약 17.1만명이 있으며, 강남구에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 수는 최근 3년간 전체 강남구 소기업·소상공인 수의 0.5~0.8%에 해당함.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 나. 검토 내용

#### ○ 출연 목적: 추가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이유

- 출연을 통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한 후 재단 상품에 가입하여 관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 및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임. 다만, 소관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초 의회 동의를 받아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한 보증한도 중 약 183억원 규모의 보증한도가 남아있는데도 재차 출연을 해야되는 이유는 △그 중 101억원의 잔여보증한도는 기보증 회수보증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용도제한이 없는 83억원 규모 보증한도를 소진하여도, 하반기 용자규모 240억원을 감당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의 보증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2)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출연 재원

- 소관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에서 보증한도 확보를 목적으로 출연금 12억을 지출하였는데, 이번 9월에도 다시 동일한 기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출연금 8억을 지출하겠다고 함.

## ○ 출연 절차

- 중소기업육성지원 정책 시행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일정 규모 금액을 출연할 것이 예측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올해 2월에 12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9월에 9억원 규모의 2차 출연에 대한 동의가 긴급하게 접수된 상황임.
- 소관부서에게는 △기존 잔여보증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2025년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 또는 제2회 추가경정에 반영한 후 집행하거나, △다음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점까지 기다려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개시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였음.
- 그러나 같은 해 내에서도 ①사업 추진 예측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긴급성 동의를 요청하는 점, ②굳이 추가경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고 연중 동일한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2회 연속 기금에서 지출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행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보임.
- 대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고 소관부서가 올해 2월에 설명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후 6월 제1회 추가경정 시점에 논의할 적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다시 9월에 이르러서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필요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출연에 대한 동의만 구하여 사업을 집행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납득하기는 어려운 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 다만, 부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2025.6.) 및 제2회 추가경정(2025.9.) 시기에 예산편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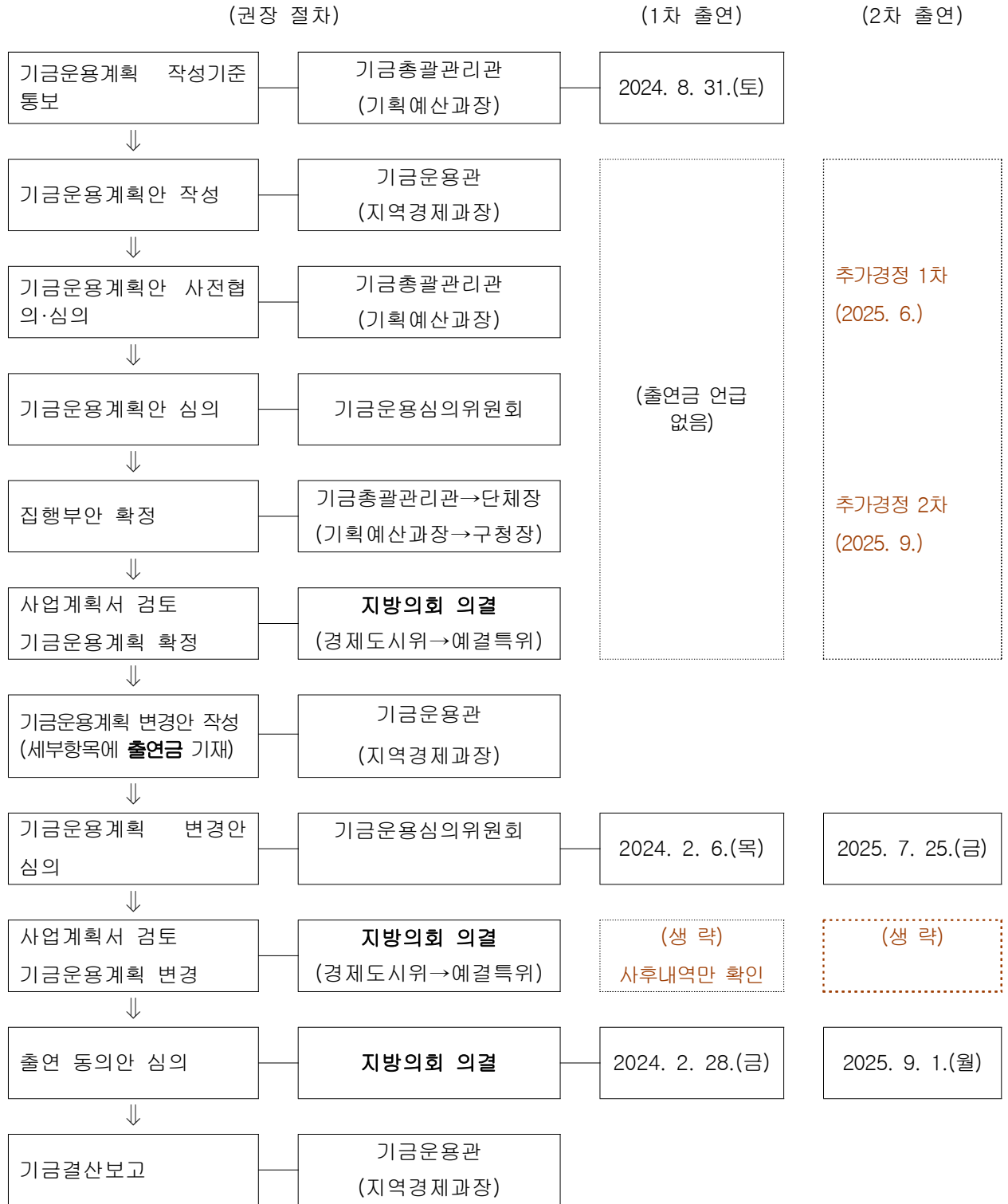
<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미편성 사유 > (지역경제과)

- 협력기관 간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 소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추가보증\*\*도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을 하려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는데 시간을 소요함.
  - 추가보증이 가능하려면 은행이 위험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한은행과 이를 협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함.
  - 기존의 정기 접수 방식이 아닌 상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협의하는데도 시간이 걸림.
  
-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소진
  - 방침 수립 시 예상했던 용자지원 신청 속도보다 2025년 기승인 용자가 6월말에 종료되어 버림.
  - 올해는 법인사업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한 것도 빠른 소진에 기여했음.
  - 이에 따라 최종 보증한도 잔액 파악이 늦어짐.
  
- 보증한도 소진 추이
  - 2024년 상반기: 28억 4,500만원
  - 2024년 하반기: 21억 9,500만원
  - 2025년 상반기: 99억 9,600만원(2024년 하반기 대비 355% 증가)소기업등(소기업·소상공인·개인)
- \*신규보증: 재단에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강남구 소재 소기업등에게 지원하는 보증
- \*\*추가보증: 재단에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소기업등에게 지원하는 보증

- 당해연도가 되어 급작스럽게 사업 기획, 접수방식 변경을 시도하여서 사업추진 1차년도에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구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전년도)에 미리 충분한 분석을 하고 난 후 다음연도에 순차적으로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면, 실무자들도 고생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만일이라도 무리해서 집행연도에 사업을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기금 활용을 고려한 바람직한 출연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올해 1차 출연과 2차 출연에 관한 절차는 [표]에서 맨 오른쪽 열을 참조 바람.

## < 기금 활용 출연 절차 검토 >



### ○ 출연 타당성

- 제1회 추가경정 및 제2회 추가경정 시점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고, 출연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내 소기업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출연 규모

- 이번 출연이 이루어진다면 강남구 지역경제과 소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협력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8차에 걸쳐 총 121억 원 을 출연하게 됨. (이번 출연은 지역밀착 특별보증에 한정)

[붙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총계) (2025. 02. 기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총계) 요약 >

년도	'08~09	'20	'21	'22	'23	'25	
						상반기	하반기
금액	9억원	6억원	26억원	30억원	30억원	12억원	8억원

보증상품	출연금액	보증규모	비 고
지역밀착 특별보증	8억원	100억원	자치구-금융기관이 연계 출연하여 관내 신용도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보증

- 앞의 [표]를 통하여 확인하면, 이번 출연 또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점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임.

○ 출연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유의할 점

- 구청장은 이번 출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출연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구하지 않았음. 일전에 이미 확인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며, 기금운용계획은 의회 심의를 통하여 정해지지만 사업과정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는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등 특별회계에 비해 운용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은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고, 그 변경 금액이 법령에 정하여진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이거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구호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인 경우에만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하였음.

-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적정 규모 내에서 더욱 넓게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고, 추가경정에서 미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설명과 같이 시기적으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음.
- 지방의회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할 의무가 있음.

#### 다. 종합 의견

##### ○ 출연의 합목적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번 출연은 강남구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지역밀착 특별보증> 시행을 목적으로 함.

##### ○ 출연 규모의 적정성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규모는 위 사업의 보증비율을 산출 근거로 책정된 금액임.

##### ○ 출연 절차의 타당성

- 이번 출연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결정 시점(2024년 12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점(2025년 6월)이 모두 경과한 뒤에야 다시 기금운용심의회 안전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이 전제되지 않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범위 내 규모로 기금을 활용한 출연을 반복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내년 사업계획 수립 및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음.

##### ○ 향후 과제

- 이 사업과 관련한 출연 시기와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미 1차 출연 검토 당시에 기술하였었음. 지난 1차 출연과 이번 2차 출연에 관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기금총괄관리관과 기금운용관리관은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지방의회 의결 없는 변경이었다는 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할 것임.

## ※ 관계 법령 및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6호]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재산의 관리
- 2. 신용보증
-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4. 경영지도
- 5. ~ 9. (생략)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1. 소기업
- 2. 소상공인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345호]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제5조(신용보증 대상)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27호]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의2. 중소기업 용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 ② 구청장은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 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85호]

**제7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6 - 01 출연금 (p.111)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참고 자료

### [붙임 1]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강남구 지역협의체 구성현황 (2025. 7. 기준)

민관공학 지역협의체	ESG 얼라이언스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② 강남구청	② 강남구청
③ 네이버 Forest CIC	③ 신한은행 강남구청점
④ 신한은행 강남구청점	④ 대진디자인고등학교
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⑤ 서울경제인협회 강남지회
⑥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⑥ 국민은행 강남구청역지점
⑦ 서울경제인협회 강남지회	⑦ 하나은행 영업지원그룹
⑧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남부센터	
⑨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 1 자치구 지역협의체 개요

**【개념】자치구 지역협의체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조직한 ①민·관·공·학 협의체와 ②ESG 얼라이언스라는 2개 조직을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각 지역 현안 논의, 정책 제안 및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민·관·공·학 협의체란**  
지역 내 민관공학 분야별 유관기관과 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활성화 정책과 전략을 설정하는 의사결정 조직입니다.

**② ESG 얼라이언스란**  
상생과 포용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자치구 지역협의체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ESG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활동 수행 조직입니다.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약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로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공헌, 윤리경영을 지칭

**얼라이언스 (Alliance)** —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기업) 간 전략적 제휴 또는 협력

### ① 협의체 구성

**【현황】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협의체 참여기관**

- ① 민·관·공·학 지역협의체 212개, ESG얼라이언스 213개 기관 참여 (24년 말 기준)
- ②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청, 대학·상인회·소기업/소상공인 단체·은행 등으로 구성

참여기관 합계		
민·관·공·학 협의체	212개	ESG 얼라이언스
	212개	213개

**③ 참여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참여기관 종류
민(보)	예산 출연, 기업 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Pool 제공	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상인회 민간 기업, 은행
관(청)	제안 출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협업 등	자치구, 세무서
공(국)	자금지원 경영지원 대상 발굴, 프로젝트 기획 및 협업	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청년센터 등
학(영)	MZ세대 네트워크 제공(서포터즈 등),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대학교, 고등학교, 캠퍼스타운, 신학협력단

### 2 자치구 지역협의체 연혁

**자치구 지역협의체 주요 활동**

- 2019. 3월 — 파일넷 자청 지역협의체 시범 구축
- 2020. 8월 — 지역일차 종합지원을 위한 1자치구 1자청(서울시 전체) 설립
- 2021. 4월 — 전 자청 민·관·공·학 협의체 구성 완료
- 2022. 7월 — 전 자청 ESG기반 활동 조직 ESG얼라이언스 구성 완료, 86건의 협업 활동 완료
- 2023. 10월 — '동행서울 골목골목 ESG, 행사 개최로 창의적 협업사례 공유, 123건의 협업 활동 완료 (누적209건)
- 2024. 12월 — 94건의 협업 활동 완료 (누적303건)

### 3 핵심성과

**상시 소통체계 구축**

- 실무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소통 플랫폼 구축
- 상시 지역 현안 밀착 발굴 및 정책 공동연구 진행

**지역 맞춤 사업 추진**

-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여 기존 자원 한계 극복
- 참여기관이 보유한 역량 및 콘텐츠 활용 극대화

**지원 사각지대 해소**

- 협력을 통한 지원 효과성 확대
- 지원 범위 확장으로 대시민 정책 체감도 상승

**우수사례 확산**

- 우수 활동사례 전국으로 전파
- 지역협의체 협력모델 전국 확장

2-1

# 대진디자인고, 논현초 학생과 지역사회 체험하기



대진디자인고, 논현초 학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체험 활동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학생들의 시선으로 전통시장 체험하기



### 1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영상 전공 학생들의 시장 홍보 영상 제작

개포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진디자인고 영상 전공 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참여학생 8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 2 논현초등학교와 영동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논현초 학생을 대상으로 떡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총 8회 개최했습니다. 총 256명의 학생들에게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 대치4동 BI '산등성길' 제작, 도곡 메타세콰이아 로드 페스타 2년 연속 개최

골목상권의 특색과 상인 의견을 반영해 대치4동 BI '산등성길'을 제작하고, 상권 매출증대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곡2동 메타세콰이아길에서 2년 연속 축제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치4동 산등성길



사은품 추천행사



상권 위생환경 개선



도곡 메타세콰이아 로드 페스타



골목상권 현수막 게시



## ▶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 발전 도모

- ①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와 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② 소상공인연합회 축제 지원, 강남푸드지원센터에 행복나눔성금 100만원 기부 등 지역사회에 행복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센터



강남푸드지원센터 기부

[붙임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관련 현황 (총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 제공, 2025. 08. 기준)

구분	기금운용심사위 심사일자	기금운용계획 의회 의결일자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일자	기관가 업부협약 체결일자	중소기업육성기 금 출연일자	출연금액	보증한도	보증배수 (출연금 대비)	보증 비율	보증료율	잔여보증한도	비고
총계	-	-	-	-	-	113억원	1,410억원	12.5배	-	-	8,371,950,000 (18,528,130,000)	용도 미제한 잔여보증한도 금액 (회수보증 용도제한 포함 금액)
제1차 (2008)	2007.10.04.	2008.07.10.	법령미존재	2008.09.19.	2008.09.29.	5억원	50억원	10배	85%	1.00%	- (전액 소진)	
제2차 (2009)	2008.09.29.	2008.12.19.	법령미존재	2009.01.20.	2009.01.22.	4억원	40억원	10배	85%	1.00%	- (전액 소진)	
제3차 (2020)	2019.10.04.	2019.12.16.	2019.11.27.	2020.02.10.	2020.02.12.	6억원	90억원	15배	100%	0.80%	- (전액 소진)	
제4차 (2021)	2020.10.19.	2020.12.17.	2021.04.16.	2021.06.14.	2021.06.14.	10억원	120억원	12배	100%	0.80%	518,000,000	
						16억원	200억원	12.5배	100%	없음	- (전액 소진)	소상공인 무이자용자
제5차 (2022)	2022.01.24.	2021.12.15.	2022.02.11.	2022.03.17.	2022.03.18.	30억원	360억원	12배	100%	0.80%	2,314,000,000	
제6차 (2023)	2022.09.29.	2022.12.15.	2022.11.25.	2023.02.27.	2023.02.28.	30억원	375억원	12.5배	95~ 100%	0.8 ~1.0%	5,539,950,000	
제7차 (2025)	2025.02.06.	<del>2024.12.</del> 2025.06.24. 출연 당시 의결없었음 (기금변경 1차에 사후반영)	2025.02.28.	2025.02.12.	2025.03.10.	10억원	150억원	15배	95~ 100%	0.8 ~1.0%	10,156,180,000	기보증회수보증으로만 사용 가능
						2억원	25억원	12.5배	95~ 100%	0.8 ~1.0%	-	은행별 한도 부여
제8차 (2025)	2025.07.25.	2025.06. 2025.09. ? 추경에 기금변경 미포함 (기금변경 3차에 사후반영 필요)	2025.09.05. (예정)	2025.9월중 (예정)	2025.9월중 (예정)	8억원	100억원	12.5배	95~ 100%	0.8 ~1.0%		내년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미리 준비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563
------------	-----

제출연월일: 2025. 8. 14.

제 출 자: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지역경제과

## 1. 제안이유

2025년도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출연개요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

라. 출 연 금 : 800백만원

마. 필 요 성

- 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재원 마련으로 기업의 휴·폐업 방지

-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정책 수혜효과 확대
- 향후 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증 여력 재원 확보

### 3. 참고사항

#### 가. 강남구 출연 현황 및 보증잔액

(2025.6.17.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5년
출연금	11,300	500	400	600	2,600	3,000	3,000	1,200
보증잔액	18,428	-	-	-	518	2,314	5,540	10,056

※ 2025년 출연금 보증잔액(10,056백만원)은 용자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을 위한 보증으로만 사용 가능

#### 나. 출연사업 개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800백만원 출연
- 보증금액 : 10,000백만원(출연금의 12.5배)
- 보증대상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일반보증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나 신용도가 양호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조건 : 업체당 최대 3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시중금리(신용등급별 상이)

#### 다. 자치구 특별보증 혜택

- 저렴한 보증료 : 용자금액의 0.8%~1.0% (일반보증의 경우 최대 2.0%)
- 높은 보증비율 : 용자금액의 95%~100% (일반보증의 경우 85~100%)
- 보증심사기준 완화 : 소액심사신용평가 적용(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생략 가능)

붙임 관계법령 1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의2. 중소기업 용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보증 지원)**

-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